

『수익증권저축약관』 개정 대비표

1. 대상약관 : 수익증권 저축약관

2. 주요 변경 내용: ①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제정에 따른 일자 삭제 및 지침명 수정

② 회사가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인출 및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 제한이
가능하도록 개정(제 24 조제 1 항)

3. 시행 예정일 : 2024년 12월 19일

4. 개정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 1 조~제 5 조 <생략></p> <p>제 6 조 ①~④ <생략></p> <p>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(고객센터>> 상품자료실&공시실>> 펀드자료실>> 공지사항>> 투자자예탁금 <신설>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(2016.5.25))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6 조 ⑥ ~ 제 23 조 <생략></p>	<p>제 1 조~제 5 조 <좌동></p> <p>제 6 조 ①~④ <좌동></p> <p>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(고객센터>> 상품자료실&공시실>> 펀드자료실>> 공지사항>> 투자자예탁금 <u>이용료</u>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<삭제>)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6 조 ⑥ ~ 제 23 조 <좌동></p>	<p style="color: red;">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지침제정으로 일자 삭제 및 지침명 수정</p>

<p>제 24 조(거래제한) ①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, <u><신설></u>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.</p> <p>② 제 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</p> <p>제 25 조~제 28 조 <생략></p> <p><부 칙> 1~7 <생략> <u><신설></u></p> <p><별첨> <생략></p>	<p>제 24 조(거래제한) ①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, <u>계좌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</u>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</p> <p>제 25 조~제 28 조 <좌동></p> <p><부 칙> 1~7 <좌동> <u>8.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별첨> <좌동></p>	<p>금융투자협회 수익증권저축약관 2024.07.01 개정 반영</p>
--	---	---

